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4. 9. 3(화) 10:00

##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
(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91호
- 나. 제 출 자 : 정재동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## 2. 제안이유

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부모교육의 대상, 내용,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~ 제8조).
- 마.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, 제16조, 제32조 등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2024. 8. 30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부모교육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,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,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(안 제2조)

####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#### 3)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-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

#### 4) 부모교육의 대상, 내용,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8조).

-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함

#### 5)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### 다. 검토 의견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교육내용에 부모교육을 명시하고 있음.
- 부모의 지식, 자질,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.

- 본 조례안은 부모가 가져야 할 가치를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양육 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건강가정기본법

[시행 2020. 5. 19.] [법률 제17280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**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** ①여성가족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9. 15.>

②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32조(건강가정교육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결혼준비교육

2. 부모교육

3. 가족윤리교육

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